이달의 초점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대응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

| 이선희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

| 김세진 |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이윤경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현황 및 개선 과제

| 강은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1)]

Family Caregiving for Long-Term Care Recipients: Current Conditions, Caregiver Burdens, and Policy Needs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가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 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가족 중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4.6%로 높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51.6%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돌봄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급여 유형별로 부담을 느끼는 영역과 제도에 대한 개선 희망 내용이 상이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도 전반 및 급여 유형별로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이 제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용자 당사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과 함께 가족의 부담 경감도 제도의 주요 목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실태를 파악할 때에는 이용자 개인의 만족 수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욕구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

1) 이 글은 김세진, 고은아, 정찬우, 이선희, 이윤경, 강은나, 오미애. (2025).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2)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수급자 조사 중 가족 관련 문항을 분석한 것으로, 수급자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그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이 중 가족 조사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돌봄 부담 완화 정도, 필요한 지원 수준 등을 파악한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경험한 부적절한 행위, 기관 계약 시 경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의 문항을 추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실태를 보다 풍부하게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는 일반 현황, 급여 이용 경험, 제도 이용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 정도,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급여 유형별(재가·시설)로는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와 부담 정도, 급여 이용에 대한 만족도, 향후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정책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은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역량과 수급자에 대한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돌봄 실태와 서비스 이용을 통한 돌봄 부담 완화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부담 수준을 살펴보고,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 경감 정도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파악하며, 셋째, 서비스 개선 욕구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부담

가.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3000명)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급여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2452명(81.7%),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549명(18.3%)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61.6%였으며,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 9.8%, 50대 35.7%, 60대 34.4%, 70세 이상 20.2%로 50대 이상이 9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66.9%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제활동 비율이 71.4%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 비해 높았다. 반면 이용자 돌봄을 위한 퇴직 경험자 비율은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10.7%로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7.2%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용자와의 관계는 딸 35.9%, 아들 29.7%, 배우자 18.8%, 며느리 9.9%였다. 급여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배우자(21.8%),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아들(40.6%)과 며느리(12.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급여 유형에 따라 주된 돌봄자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응답 가족의 40.7%는 이용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같은 읍면동 거주 21.1%, 같은 시군구 거주 17.0%로, 60% 이상이 이용자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응답자 수	3,000	2,452	549
구성비	100.0	81.7	18.3
응답 가족의 성별			
남성	38.4	36.9	45.1
여성	61.6	63.1	54.9
응답 가족의 연령대			
50세 미만	9.8	9.2	12.7
50대	35.7	35.8	35.1
60대	34.4	33.1	39.9
70세 이상	20.2	21.9	12.3
경제활동 및 퇴직 경험			
경제활동 참여자 비율	66.9	65.9	71.4
이용자 돌봄을 위한 퇴직 유무			
이용자 돌봄을 위한 퇴직 경험자 비율	10.1	10.7	7.2
이용자와의 관계			
딸	35.9	36.0	35.1
아들	29.7	27.2	40.6
배우자	18.8	21.8	5.3
며느리	9.9	9.3	12.4
이용자와의 거주 근접성			
동거	40.7	49.9	0.0
같은 읍면동 거주	21.1	19.3	29.0
같은 시군구 거주	17.0	13.3	33.3
같은 시·도 거주	7.2	5.9	13.2
다른 시·도 거주	14.0	11.7	24.4

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 3000명 자료를 분석함. 사후 가중값 적용으로 합계가 소계와 다를 수 있음.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16-417의 표 〈4-1〉~〈4-3〉 재구성.

나. 가족의 돌봄 제공 현황

조사에 참여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돌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주 3회 이상 이용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은 정서적 지원 62.1%, 신체수발 지원 53.5%, 가사 지원 52.7%, 일상생활 지원 36.9%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제공에 따른 부담 수준에 대해 가족들은 신체수발 지원 38.9%, 일상생활 지원 37.7%, 가사 지원 34.2%, 정서적 지원 26.0%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돌봄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 가족의 돌봄이 병행되고 있는데, 일부 가족은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정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월 1회 이상 제공하는 비율이 각각 81.9%와 62.5%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병원동행 등의 일상적 지원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부담 수준은 20%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

다. 가족의 돌봄 부담

이용자를 돌보는 일 전반에 대해 가족의 51.6%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급여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54.0%)이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40.6%)보다 부담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재가급여가 1일 3~4시간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그쳐 나머지 시간의 돌봄이 가족의 직접 돌봄으로 남는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인식은 반대 양상을 보였으며,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59.4%)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40.9%)보다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국 어떤 급여를 이용하든 장기요양 이용자 가족의 절반은 돌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볼

[표 2]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이 지난 1년간 이용자에게 제공한 돌봄의 빈도와 부담 정도

(단위: %)

돌봄 유형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주 3회 이상 제공	부담된다 이상[1)]	월 1회 이상 제공	부담된다 이상
정서적 지원	62.1	26.0	81.9	15.9
일상생활 지원	36.9	37.7	62.5	19.8
가사 지원	52.7	34.2	-	-
신체수발 지원	53.5	38.9	-	-

주: 1) 각 돌봄을 제공한 응답자에 한해 부담 정도를 파악함('부담된다'와 '매우 부담된다' 응답의 합).
2)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4개 유형,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2개 유형만 조사함.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57-470의 표 〈4-19〉~〈4-26〉, pp. 518-522의 표 〈4-57〉~〈4-60〉 재구성.

[표 3]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부담자 및 가족의 부담 인식

(단위: %)

특성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이용자 돌봄 전반의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51.6	54.0	40.6
가구 소득 대비 본인부담금 부담 정도[1)]			
(매우) 부담된다	44.4	40.9	59.4

주: 본인부담금 면제 응답자를 제외한 2419명 분석.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40의 표 〈4-11〉, p. 438의 〈4-10〉 재구성.

수 있으며, 부담의 종류가 재가급여에서는 직접 돌봄으로, 시설급여에서는 비용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만족도

가. 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85.2%), 사회참여 활동 향상(79.0%),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73.3%)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2022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부담금이 정률로 반영되는 구조에서 월 한도액 및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함께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즉, 보장성 확대와 수가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도움 정도(긍정 응답률)

(단위: %)

구분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2022년(전체)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	86.2	84.3	94.9	89.1
정신적 부양 부담 완화	85.2	83.6	92.9	86.7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	73.3	72.3	77.5	78.0
사회참여 활동 향상	79.0	76.5	89.9	78.5

주: '매우 도움(만족)'과 '도움(만족)' 응답의 합. 2022년 '사회활동 강화' 문항은 2025년 '사회참여 활동 향상'으로 표현이 일부 조정됨.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42-448의 표 〈4-12〉~〈4-15〉, p. 452의 표 〈4-17〉 재구성.

급여 유형별로는 네 가지 차원 모두에서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 비해 부담이 완화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일상적인 돌봄이 시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의 직접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제도 만족도

1)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4.6%로, 2022년 86.2%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급여 유형별로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87.5%)가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8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양부담 완화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게 해석 가능하다.

2) 급여 유형별 서비스 만족도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 서비스별 전반적인 만족도는 주야간보호 92.4%, 방문목욕 91.5%, 방문간호 89.3%, 방문요양 88.8%이다. 세부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91.0%)와 서비스 내용 만족도(88.9%)는 높은 수

[표 5]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 만족도(긍정 응답률)

(단위: %)

구분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2022년(전체)
제도 전반 만족도	84.6	83.9	87.5	86.2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2의 표 〈4-17〉 재구성.

[표 6] 재가급여 유형별 서비스 만족도(긍정 응답률)

(단위: %, 명)

구분	전반적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직원	이용시간·이용일수 만족도	서비스 내용	시설의 물리적 환경	(명)
방문요양	88.8	91.0	69.0	88.9	-	(1,373)
방문목욕	91.5	93.6	81.3	91.8	-	(508)
방문간호	89.3	88.7	75.0	91.9	-	(97)
주야간보호	92.4	93.3	88.2	91.5	91.1	(550)
단기보호[1)]	94.1	94.6	91.0	88.5	89.6	(14)

주: 단기보호 이용자 가족은 사례 수(14명)가 매우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73-501의 표 〈4-27〉~〈4-48〉 재구성.

[표 7] 시설급여 서비스 만족도(긍정 응답률)

(단위: %)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항목별	만족도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항목별	만족도
시설의 환경	93.6	식사	89.7
목욕 및 청결 서비스	93.2	신체·인지기능 증진 서비스	88.3
장기요양기관 직원	92.7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70.4
간호 및 의료서비스	90.9	전반적 만족도	91.4

주: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549명 분석.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24-538의 표 〈4-61〉~〈4-68〉 재구성.

준을 보인 반면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69.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과 일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가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전반 만족도는 91.4%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서비스 내용별로는 시설의 환경 93.6%, 목욕 및 청결 서비스 93.2%, 장기요양기관 직원 92.7%, 간호 및 의료서비스 90.9%, 식사 89.7%, 신체·인지기능 증진 서비스 88.3%였다.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70.4%로 가장 낮았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욕구

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33.4%)과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30.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심리상담서비스 13.2%, 단기보호서비스 또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11.0%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35.6%),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53.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급여 유형별 서비스 만족도 및 부양 부담 완화 정도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상시적 돌봄에 대한 부담과 서비스 불충분성의 문제,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문제를 보다 중요한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재가급여의 경우 충분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확보,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8]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특성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33.4	28.9	53.8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30.9	35.6	9.6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3.2	12.6	15.9
단기보호서비스 또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11.0	12.2	5.7
병원 이동 부담 완화	6.6	6.2	8.4
돌봄 교육	3.2	3.0	4.3
자조모임 활성화	0.7	0.7	1.0
기타	0.9	0.8	1.2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0의 표 〈4-16〉 재구성.

나. 재가급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가족의 인식

재가급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선호하는 돌봄 장소로 응답 가족의 43.5%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응답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33.5%, 요양병원 19.8%순이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들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재가 거주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존 재가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확대(44.2%)를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15.3%, 원하는 시간 수시 이용(1일 다회 서비스) 12.8%, 복합재가급여서비스(통합재가서비스 등) 활성화 9.6%, 단기보호기관 확대 8.2% 등이었다. 이는 재가서비스 만족도에서 이용시간·일수 항목이 일관되게 가장 낮았던 결과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들이 생각하는 재가 거주 지속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신규 서비스는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33.8%), 방문형 의료

[표 9]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인지하는 이용자 건강 악화 시 선호 돌봄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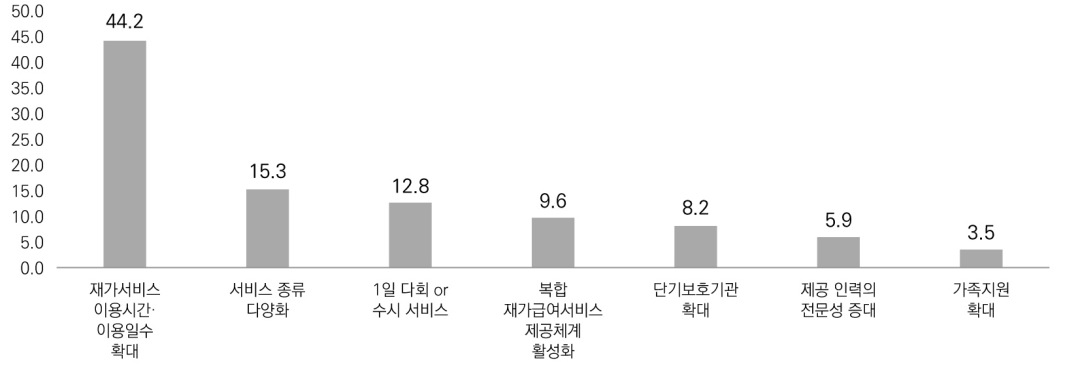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집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집 근처	기타
비율	43.5	33.5	19.8	2.5	0.7

주: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2452명 분석.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22의 표 〈4-54〉 재구성.

[그림 1] 지속적 재가 거주를 위한 기존 서비스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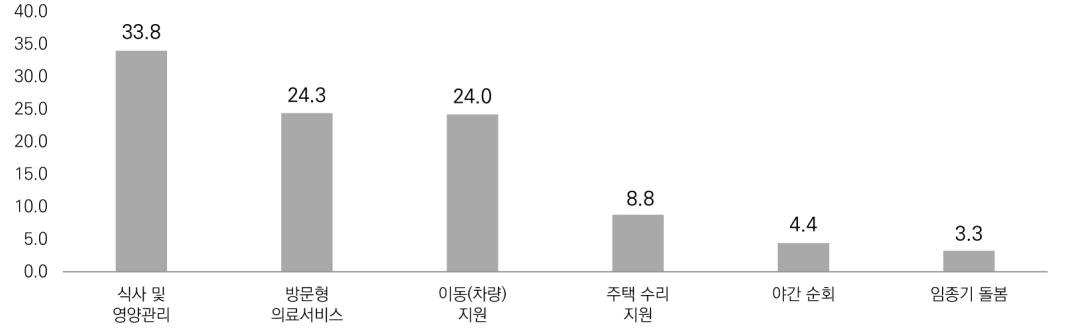
(단위: %)



주: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2452명의 자료를 분석.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13의 표 〈4-55〉 재구성.

[그림 2] 지속적 재가 거주를 위해 필요한 신규 서비스

(단위: %)



주: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2452명의 자료를 분석.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15의 표 〈4-56〉 재구성.

서비스(24.3%), 병원 방문·외출을 위한 이동지원(2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직접 수행하는 돌봄 중 일상생활 지원의 부담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식사지원·이동지원은 필요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라 볼 수 있다.

다. 시설급여: 시설급여 개선에 대한 가족의 인식

시설급여 이용자의 시설 입소 결정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활동·사회활동으로 인한 24시간 돌봄의 어려움(35.0%)과 수급자의 기능상태 악화(34.7%)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가족 중 이용자의 건강이 호전될 경우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표 10] 시설 입소자의 시설 입소 결정 사유 및 건강 호전 시 재가복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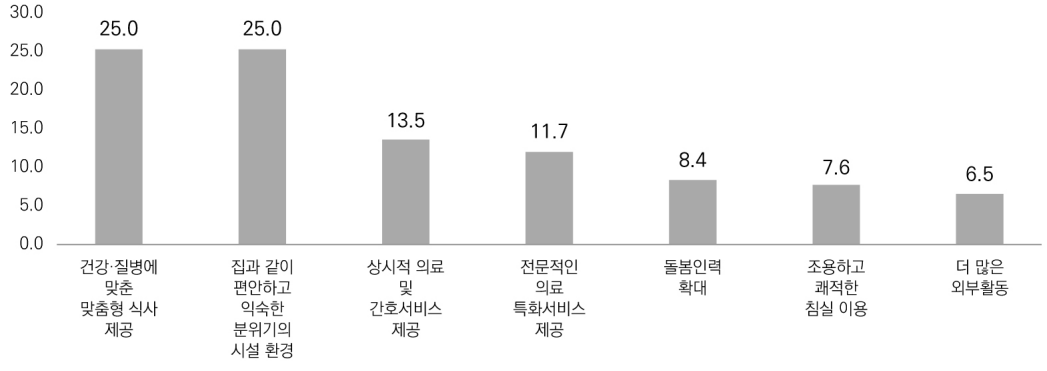
(단위: %)

시설 입소 결정 사유[1]		건강 호전 시 재가복귀 의향[1] 및 곤란 사유[2]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35.0	(의향) 집으로 모실 의향 있음[1]	17.1
수급자의 기능상태 악화	34.7	(곤란 사유[2]) 계속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79.6
가족원의 건강 문제	9.3	(곤란 사유[2]) 주기적 의료·건강관리가 어려워서	9.4
전문적인 돌봄·의료 서비스 이용 필요	7.9		
집에서 모시기에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7.0		
현재 재가서비스로는 불충분	3.9		

주: 1)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549명의 자료를 분석.
2)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응답한 455명 대상.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40-543의 표 〈4-69〉~〈4-71〉 재구성.

[그림 3] 시설의 우선 개선 희망 사항

(단위: %)



주: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 549명의 자료를 분석.
출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김세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45의 표 〈4-72〉 재구성.

17.1%로 매우 적었다. 집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로는 계속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79.6%)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시설 입소자의 재가복귀를 위해서는 돌봄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들이 인지하는 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으로는 건강·질병에 맞춘 맞춤형 식사 제공과 집과 같이 편안하고 익숙한 분위기의 시설 환경이 각각 25.0%로 가장 높았고, 상시적 의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 13.5%, 전문적 의료 특화서비스 제공 11.7%였다. 이는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지원 외에 수급자 개인의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시설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가족들이 부담하는 병원 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부담 수준과 연동된 결과로 볼 수 있다.

5 나가며

지금까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실태와 부담,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욕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들은 장기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고 제도의 돌봄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족이 상시적 돌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서비스 이용량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타 항목에 비해 낮았는데, 이를 통해 급여량 부족이라는 미충족 욕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수급자 지원 확대는 결국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가족 지원은 수급자 지원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여기서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장기요양체계 전반에서의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급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직접 돌봄,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돌봄 부담이 높았다. 따라서 재가급여의 경우 서비스양 확충을 통한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관리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고려한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가급여의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확대가 필요하다. 재가서비스 만족도에서 이용시간·이용일수에 대한 만족도는 타 항목에 비해 낮았다.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69.0%로 타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 재가 거주를 위한 개선 사항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과제 모두 서비스양의 확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가서비스 이용량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2026년 10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7년 재가급여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를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 이용 시 최대 월 48회, 2등급자는 월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증액한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5). 이러한 재가급여 이용량의 확대는 돌봄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고난도 대상자(예-임종기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재가급여의 신규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하다.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종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이 조사 결과 가족들은 재가 거주 지속을 위한 신규 서비스로 식사 및 영양관리(33.8%), 방문형 의료(24.3%), 이동지원(24.0%)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택의료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6). 다만 재택의료서비스는 현재 전국에서 400여 곳이 운영 중이라 인프라가 부족하다.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한 숙고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욕구를 언제까지 시범사업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 급여 내용의 제도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급여 내 개별화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과 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시설 이용자 가족의 우선 개선 희망 사항은 맞춤형 식사 제공과 집과 같이 편안하고 익숙한 분위기의 시설 형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욕구도 높은 수준(상시적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 13.5%+전문적인 의료 특화서비스 제공 11.7%)을 보여 시설 내 의료서비스의 확충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설 이용자의 가족들은 병원동행 등을 위한 돌봄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시설 내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계약의사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약의사제도의 운영, 간호인력 배치 기준의 실효성 점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요양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44.4%가 가구소득 대비 본인부담금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통한 부담 완화에서도 경제적 부담 완화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설 서비스 만족도에서 비용 만족도가 타 만족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정률 부담으로 월 한도액이 증가하여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정부에서 보장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만큼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이용자 본인 부담에 대한 고

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시설급여의 경우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통해 이용자들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세진, 고은아, 정찬우, 이선희, 이윤경, 강은나, 오미애. (2025).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6. 10. 29.).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게"** [보도자료].

 DOI: 10.23062/2026.11.3

Family Caregiving for Long-Term Care Recipients: Current Conditions, Caregiver Burdens, and Policy Needs

Kim, Se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rawing on data from the 2025 Long-Term Care Survey,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family caregiving for long-term care recipients, family caregivers' satisfaction with long-term care assistance, and the types of support they believed should be expanded. The vast majority—84.6 percent—of family caregivers reported being satisfied with long-term care assistance overal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perceived as helping to alleviate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burdens of caregiving. Nevertheless, 51.6 percent still found caregiving burdensome despite receiving such assistance. The types of assistance that family caregivers wanted to see expanded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care was provided in institutional or home-based set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long-term care system and its individual benefit programs, accounting for the distinct needs of institutional and home-based care settings, to reduce the burden of caregiving on families.